

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상 호	등록번호	
	대표자	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)	
	영업소 소재지	전화번호	

변 경 내 역

변경 구분	변경 연월일	변경 전	변경 후

「전기공사업법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.

신고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지정공사사업자단체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: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: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.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: 기업진단보고서 1부 4.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: 「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	수수료 「전기공사업법」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
지정공사 사업자단체 확인사항	1.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나.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) 자기 소유인 경우: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)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: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) 임대차인 경우: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.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나. 외국인등록증(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: 「국민연금법」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사업자단체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,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「국민연금법」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다만,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지정공사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5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인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